|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경상항목 외환관리**  **관련문제 개선에 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 관리부, 선전, 다롄, 칭다오, 샤먼, 닝보시 분국:  세관특수감독관리 지역의 경상항목 외환수지관리를 완비하고, 대외무역 발전방식의 전환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관특수 감독관리구역 외환관리방법>(환발[2013]15호)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2013년 6월 1일부터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경상항목 외환관리를 진일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현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기구(이하 ‘구내기구(区内机构)’)는<보세감독관리구역외환등기증>(이하’<등기증>)을 발급 없이, <등기증> 연간검사를 진행한다. 이미 기 발급한 <등기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신설한 구내기구의 화물무역외환수지 처리는 결제구매 전 ，<화물무역외환관리안내> 및 그 실시 세칙(환발[2012]38호 발행, 이하’화물무역법규’)에 근거하여 소재지 국가 외환관리국 분지국(이하’외환국’)에 가서 ‘무역외환수지기업명부’(이하’명부’)의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기증>을 기 처리한 구내기구는 화물무역법규 규정에 따라 <화물무역외환수지업무처리확인서>에 서명하면 자동으로 명부에 포함된다.  금융기구는 명부에 없는 구내기구가 직접 화물무역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구는 ‘화물무역외환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해당 구내기구가 ‘특수감독관리구역내기업’인지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2. 구내기구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배경에서 화물무역 수출대금을 경외에 예치할 수 있다. 구내기구는 수출대금을 경외에 예치할 경우,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계좌개설 등록, 예치규모, 기한 및 소환(调回)요구 등 화물무역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타 경상항목 외환수입을 경외에 예치할 경우, 서비스무역외환관리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구내기구 화물무역의 외환송금관리를 간소화 한다. 구내기구가 화물무역 외환송금을 처리할 경우, 화물무역 법규를 참고하여 상응하는 유효한 증빙과 상업 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등기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소재지 이외의 성, 시에서 타지역외환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화물무역법규 규정은 수출입화물세관신고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보세 항목 하의 화물무역은 수출입화물의 비안(备案)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금융기구는 수출입화물 비안 목록 또는 수입화물통관서 전자장부심사, 결재 등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구내기구가 화물무역 외환지불수속을 진행 할 시, 제공한 원본 수입화물세관신고서 또는 수입화물비안목록 상의 경영단위가 기타 기구일 경우, 지불한자와 경영단위가 일치하지 않은 원인의 서면설명, 거래 진실성 및 비즈니스 증거자료, 관련 세관감독관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참고하기 위해 보관한다. 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4. 구내기구는 그 진실하고 합법적으로 수입대금을 필요에 따라 사전에 외화를 매입하여경상항목외환계좌에 예금할 수 있다. 계약변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내기구의 사전외화매입 및 실제 대외지불은 동일한 금융기구에서 처리한다. 구내기구는 그 경상항목 외환계정에서 자체적으로 결제 및 보존이 가능하다.  5. 구내기구 화물무역 결재관리를 간소화 한다. 구내기구는 화물무역법규에 따라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금융기구에서 화물무역 수입결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6. 구내기구 서비스 무역외환관리를 간소화 한다. 구내기구는 인민폐로 환전이 건당 5만 달러 이하의 서비스무역 외환수지를 처리할 수 있으며, 금융기구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심의하여야 하지만, 자금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외환수지업무에 대해서는 구내기구와 개인이 제출한 거래증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구내기구가 인민폐로환전이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서비스무역외환수지를 처리할 경우, 금융기관은 서비스무역외환관리법규 규정에 따라 직접 거래증서를 심의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며, 규정에 따라 세무증빙문건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7. 외환국은 화물무역법규에 따라 구내기구화물무역 외환수지에 대해 비현장감독을 진행하며, 이상 혹은 의심스러운 경우 현장검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및 조사결과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한다.  각 분국, 외환관리국(이하’각분국’)은 화물무역법규에 따라 제정한 본 지역 세관특수감독관리구 또는 화물무역외환관리 위험예방규정을 참고한다.(첨부파일 참조) . 톈진, 상하이, 장쑤, 광둥, 충칭, 저장, 선전, 칭다오, 닝보 등 아홉개의 성, 시분국, 외환관리부는 2013년 5월 28일전에 본 지역 위험예방규정보총국에 비안해야 한다. 각분국은 적극적으로 지방의 관련 부서와 교류 및 협력하여 감독관리에 필요한 세관특수감독구역 화물류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한다.  각 분국은 정문(正文)을 즉시 관할내의 중심지국, 중자외환지정은행, 지방상업은행, 외자은행에 고지해야 한다. 집행과정 중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경상항목관리사에 문의하도록 한다.  첨부파일：생략  국가외환관리국  2013년 5월 22일 |  | **国家外汇管理局**  **关于改进海关特殊监管区域经常项目**  **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  为完善海关特殊监管区域经常项目外汇收支管理，支持外贸升级转型，促进外贸稳定增长，根据《海关特殊监管区域外汇管理办法》（汇发[2013]15号），国家外汇管理局决定自2013年6月1日起，进一步改进海关特殊监管区域经常项目外汇管理。现就有关问题通知如下：  一、海关特殊监管区域机构（以下简称区内机构）无须办理《保税监管区域外汇登记证》（以下简称《登记证》）及进行《登记证》年检。已核发的《登记证》不再使用。  新设区内机构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购结汇前，应按照《货物贸易外汇管理指引》及其实施细则（汇发[2012]38号文印发，以下简称货物贸易法规），到所在地国家外汇管理局分支局（以下简称外汇局）办理“贸易外汇收支企业名录”（以下简称名录）登记手续。已办理《登记证》的区内机构，按照货物贸易法规规定签署《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办理确认书》后自动列入名录。  金融机构不得为不在名录的区内机构直接办理货物贸易外汇收支业务。金融机构应当通过“货物贸易外汇监测系统”查询确认该区内机构为“特殊监管区域内企业”后，按规定为其办理相关外汇收支业务。  二、区内机构可将具有真实、合法交易背景的出口收入存放境外。区内机构将出口收入存放境外应当具备的资格条件、开户登记、存放规模、期限以及调回要求等应按货物贸易法规办理。其他经常项目外汇收入存放境外应按服务贸易外汇管理法规办理。  三、简化区内机构货物贸易付汇管理。区内机构办理货物贸易付汇，参照货物贸易法规提供相应有效凭证和商业单据，无须提供《登记证》，可以在所在地以外的省、市办理异地付汇业务。货物贸易法规规定需提供进出口货物报关单的，保税项下货物贸易可以以进出境货物备案清单替代。金融机构无需办理进境货物备案清单或进口货物报关单电子底账核注、结案等手续。  区内机构办理货物贸易外汇支付手续时，如提供的正本进口货物报关单或进境货物备案清单上的经营单位为其他机构，须提供付汇人与经营单位不一致原因的书面说明及可证实交易真实性及该不一致情况的商业凭证及相关海关监管单证，并留存相关单证备查。金融机构按规定进行合理审查。  四、区内机构可以根据其真实合法的进口付汇需求提前购汇存入其经常项目外汇账户。提前购汇及实际对外支付须在同一家金融机构办理，因合同变更等原因导致区内机构提前购汇后未能对外支付的，区内机构可自主决定结汇或保留在其经常项目外汇账户中。  五、简化区内机构货物贸易结汇管理。区内机构按货物贸易法规凭相关单证在金融机构办理货物贸易收入结汇，金融机构按规定进行合理审查。  六、简化区内机构服务贸易外汇管理。区内机构办理单笔等值5万美元（含）以下的服务贸易外汇收支，金融机构原则上可不审核交易单证，但对于资金性质不明确的外汇收支业务，金融机构可要求区内机构和个人提交交易单证进行合理审查。区内机构办理单笔等值5万美元以上的服务贸易外汇收支，由金融机构按照服务贸易外汇管理法规规定直接审核交易单证后办理。按规定应提交税务凭证的，从其规定。  七、外汇局按照货物贸易法规对区内机构货物贸易外汇收支进行非现场监测，对异常或可疑情况进行现场核查或现场检查，并根据核查和检查结果进行分类管理。  各分局、外汇管理部（以下简称各分局）应参照货物贸易法规制定本地区海关特殊监管区域货物贸易外汇管理风险防范操作性规定（要求见附件）。天津、上海、江苏、广东、重庆、浙江、深圳、青岛、宁波等九省、市分局、外汇管理部应于2013年5月28日前将本地区风险防范操作性规定报总局备案。各分局应积极与地方相关部门沟通协调，取得用于监管需要的海关特殊监管区域货物流数据。  各分局应将通知正文及时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中资外汇指定银行（含总行）、地方性商业银行、外资银行。执行过程中如遇问题，请及时向国家外汇管理局经常项目管理司反馈。  附件：略  国家外汇管理局  2013年5月22日 |